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640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이준석 · 이주영 · 천하람
최수진 · 박성민 · 박준태
이인선 · 김상훈 · 강대식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공현황”을 “제공현황, 안정성 확보”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의 안정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

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제공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u>제공현황</u>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 설></u></p> | <p>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 ----- ----- ----- -----<u>제공현황, 안정성 확보</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u></p>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의 안정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제공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